

#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0. 3. 11(목)  
기획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10. 2. 18.
- 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10. 2. 19.
- 라. 상정일자 : 2010. 3. 5.(제182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)
  - 제안설명 : 기획관리실장 정병일
  - 검토보고 :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
  - 질의 및 토론
  - 원안가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2007. 11. 1일 재의결된 「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이 무효 판결되어(2007추141호, 2009. 12. 24)이전 조례로 환원하여
-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과 심의대상사업을 법령에 따라 운영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2조)
-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사업을 조정함(안 제3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#### ○ 동 조례안은

- 「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」를 제158회('07.9.18) 본회의시 의결하였으나,  
'07.10.5 인천광역시장의 재의요구에 따라 제160회('07.11.1) 본회의에서 재의결 '07.11.12에 조례 공포 되어,
- '09.12.24 대법원에서 본 조례안 재의결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을 판결함에 따라 당초 조례인 「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」로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○ 대법원 판결 주요내용은

- 지역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중(현행 조례 제2조 제2호, 조례 제10조)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과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시행되는 각 개발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업자 선정은 국가사무에 해당되어 이와 관련된 시·도지사의 사무는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하는 기관위임사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“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” 부분은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이 되므로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며,
-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과 조성된 용지의 매각 등에 대하여는(조례 제9조 제2항, 제3항) 도시개발법 등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각 개발사업에 관한 사무가 국가 사무에 해당되어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에 해당하고 특히 제3항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우선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경제자유구역법령에 위반하여 위법하고,

-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의회 의장이 5인 이내의 시의원을 민간투자위원회 의원으로 추천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 (조례 제11조 제3항)한 것은

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시장의 인사권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음.

다만, 2008. 8. 4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 제11조 제3항 중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장이 15인 이내, 의장이 5인 이내의 시의원을 각각 추천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위법사항을 해소한 바 있음.

-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외국인 투자기업이 토지매각 또는 대부 등의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조세감면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한 것은,

공유재산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격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음.

- 조례 안 중 일부 조항이 법령에 위배되는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것으로 판결하였음.

#### ○ 당초 조례 내용에 추가 개정되는 사항으로

- 안 제2조 위원 구성중 “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.”를 “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한다.”로 개정하고
-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중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「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5조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사업은 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,
-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민간투자사업 현황과 민간투자 사업 중 중앙 및 시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### < 질 의 >

- 윤지상, 김소림, 이근학, 이상철, 조남희 위원
  -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몇건이 부결 및 가결 되었는지, 본 조례에 대한 대법원 재판 과정상 비용은?
  - 집행부와 시의회간에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본 조례에 대한 개정 사항을 재판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전에 논의하고 서로간의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었음.
  - 당초 본 조례는 인천지역에서 행해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산보호 차원에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임.
  - 대법원 판결에서 조례안 제3조의2가 상위법령에 위반한다거나 또는 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위법부분이 아닌 조항에 대한 계획은?
  - 조례안 제5조 2항중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.
  -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서 기술한 조례의 무효판결이라는 표현보다는 대법원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이 효력이 없음으로 판결한 것으로 이를 정정하였으면 좋겠음.

### < 답 변 >

- 정병일 기획관리실장
  - 민투사업 심의결과는 바로 찾아서 드리겠음. 비용은 행정소송이고 민사소송 아니므로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았음.
  - 조례의 일정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체 조례가 무효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라든지 전체 조례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음.

- 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. 서면심의는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임.

## 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윤지상, 김소림, 지정구, 이근학, 이상철, 조남휘 위원

나. 반 대 : 없음

## 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 (재석위원 전원찬성 : 6명)

## 7. 기타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붙 임 :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#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리실장, 보건사회국장, 가정복지국장, 문화관광체육국장, 도시계획국장, 환경녹지국장 및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, 대학교수 등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한다.

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④ 시장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이 곤란한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에 불구하고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「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사업은 제외한다.

1.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
2. 법 제9조 규정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
3. 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4. 법 제13조 및 제49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
5. 법 제47조제1항 규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
6. 법 제50조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.

제6조(간사 등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공기업민원담당관이 되고, 서기는 민간투자업무담당이 된다.

제7조(의견청취 등)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,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군수·구청장 및 관련 사업 시행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8조(회의록)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수당 및 여비) 위촉직 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